

안산시의회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182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09. 03. .
발 의 자 : 성준모 의원 외 8인

1. 주 문

- 안산시의 경제 · 사회 · 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지속발전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범한 에버그린21 재단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『안산시의회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 특별위원회』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

가. 구성목적 : 에버그린21 환경재단의 지난해 운영성과와 금년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예산내역의 실효성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.

나. 활동기간 : 2009. 4. . ~ 2009. 6. .

다. 위원수 : 인

2. 제안이유

- 안산의 환경문제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민간재원 발굴과 모금을 기획하는 등 발전방안을 유도하고 있는지 조사하고
- 예산편성내역을 분석하여 적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조직, 전문가 그룹의 확보사항을 분석코자 하며
- 에버그린21 재단의 면밀한 평가와 지역의 환경재단으로서 올바른 위상과 역할의 정립에 도움과 조언을 주며
- 전국 지자체 최초 출연 환경재단의 면모를 일신하며 명실 공히 환경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지도·편달하기 위함임.

3. 참고사항

□ 지방자치법 제56조(위원회설치)

-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

-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□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(특별위원회)

-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.
- ③ 삭제 <2006.9.28>
- ④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-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.
-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